

2018년도
황간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영 동 군
(기 획 감 사 실)

- 2018년도 황간면 -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감사내용 》

- 기 간 : 2018. 4. 23. ~ 4. 26. (4일간)
- 대상기관 : 황간면
- 감 사 반 : 기획감사실장 외 5명
- 감사범위 : 2015. 6월부터 추진한 업무전반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실태
 - 보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 등
 - 인허가 등 민원처리실태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현황

《 감사결과 》

- 총 지적건수 : 22건
 - 행정상 조치 : 22건(주의 11, 시정 11)
 - 재정상 조치 : 회수 4건 2,185,770원 / 지급 1건 949,420원
 - 신분상 조치 : 2건(주의 1, 훈계 1)

■ 수범사례

- 『월류사랑 행복나눔 Day』 운영
 - 찾아가는 복지상담의 일환으로 매주 월요일 31개 마을의 저소득가구를 면장과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 등이 직접 위로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복지 추진

주요 지적사항

연도	부서명	지 적 사 항	처분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합계	총무 10 주민복지 3 민원봉사 1 산업 8	22건	주의 11 시정 11	주의 1 훈계 1	회수 4건 / 2,185,770원 지급 1건 / 949,420원
1	총무	◦ 주민자치프로그램 물품 구입 부적정	주의		
2		◦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주의		
3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시정		
4		◦ 신용카드 결재대금 계좌관리 부적정	시정		
5		◦ RFID 물품 전자태그 발행 및 부착 소홀	시정		
6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26,230원
7		◦ 회계관계 공무원의 이동보고 소홀	주의		
8		◦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 미 준수	주의		
9		◦ 공용차량 이용 직원의 출장명령 절차 미 이행	주의		
10		◦ 시설공사 하자검사 추진 소홀	주의		
11	주민복지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1,940,000원
12		◦ 장애인 표지판 발급 부적정	주의		
13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지급 업무 및 관리 소홀	시정	주의	
14	민원봉사	◦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기재소홀	주의		
15	산업	◦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첨부서류 확인 소홀	시정	훈계	
16		◦ 소규모사업 공사감독 소홀	시정		회수 115,000원
17		◦ 소규모사업 공사원가계산 제경비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104,540원 지급 949,420원
18		◦ 옥외광고물 관리 소홀	시정		
19		◦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 보상금 지급 부적정	주의		
20		◦ 산불감시원 운영관리 소홀	주의		
21		◦ 산불감시원 임금지급 부적정	주의		
22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자연·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업무 소홀	시정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주민자치프로그램 물품 구입 부적정

【현 황】

(단위 : 천원)

예산편성				예산집행				비고
사업명	예산 금액	편성목/ 통계목	적정예산 과목 (편성목)	지급일	적요	구입 품목	지출 금액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 및 ○○공사	15,600	시설비	자 산 취 득 비	2017.12.27	황간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 및 ○○시설 설치	냉난방기 외	14,352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분야·부문은 기능별로 별표 9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부문의 기능에 맞게 별표 10과 같이 설정·운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설비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401-01-4), 문화재 발굴경비로 구분하여 집행하며, 자산취득비에 대해 자산취득은「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주요물품정수책정기준”에 의한 물품구입에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실장·과장 및 기타관서의 장이 일상경비로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0조에 따라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황간면에서는 2017년 주민자치프로그램실 ○○○○ 및 ○○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냉난방기 등 물품은 시설비가 아닌 자산취득비로 예산편성을 하여 구매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시설비로 부적정하게 편성하여 집행 하였고, 2017.12.19.일 납품시 납품서에 납품확인을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물품 검수 후 검수조서 작성을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황간면장은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현 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전입세대환영카드 제작발송	500	0	540	0	540	0	미집행
등산로 정비 자재구입	4,000	0	4,500	0	4,000	0	미집행
면사무소 디지털카메라 구입					450	0	미집행
차량선박비			10,080	12,552			과다집행
청소차량 엔진오일 교체 (2017.1.31.지출)						230	예산과목 착오지출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세출예산 집행은 편성된 예산과목과 예산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차량선박비 집행과 관련하여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연료비와 부대경비는 연료비에서 집행하고, 차량·선박 유류비와 이륜차의 유지비는 차량·선박비에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황간면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전입세대환영카드 제작발송 및 등산로 정비 자재구입 예산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수립하였으나 전혀 집행하지 않았으며, 면사무소 디지털카메라를 예산편성하였음에도 집행하지 않았고, 차량선박비를 예산액 대비 과다 지출 하였으며, 청소차량 엔진오일 교체를 「청사관리운영」 과목으로 지출해야 함에도 「환경정비및방역」 과목으로 지출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황간면장은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현 황】

○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현황

(단위: 원, '18.3.20 기준)

계좌현황			반환 및 세입 예정 내역					비고
계좌번호	계좌명의 (부기명)	계좌잔액	적요	대상자	총액	군 세입	근로자 반환	
-	황간면사무소 (세입세출외현금)	152,070	총계	4명	141,000	70,500	70,500	
			건강(장 기요양) 보험료	-	45,000	22,500	22,500	
				-	45,000	22,500	22,500	
				-	45,000	22,500	22,500	
				-	6,000	3,000	3,000	

※ 황간면 제출자료 재구성

【위법부당사항】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에 의하여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 내 청구하여야 하며,
-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제73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으로 구분 정리되며, 제74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고, 납입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원칙에 따라

현금이 입금된 당일에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즉시 이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납입금이 수납되면 수납된 일자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관리를 하여야 함.

-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군 금고에 입금의뢰를 통지하고, 군 귀속금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하여야 함.
- 황간면에서는 2015년 ○○○○○○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료 환급금 외 22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신청 안내를 받았음에도 적기에 환급신청을 하고 있지 않다가 감사시작일에 임박하여 수납 및 반환 처리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환급금 청구권 소멸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고,
- 2018.3.20.일 기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의 잔액은 152,070원이나, 향후 반환 및 세입조치할 금액은 기간제근로자 ★★ ★ 외 3명에게서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141,000원으로 11,070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황간면장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의 잔액과 반환 및 세입조치할 금액과의 차액 11,070원을 세입조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신용카드 결제대금 계좌관리 부적정

【현 황】

○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

(단위 : 원, '18.4.25기준)

계좌번호	사용용도	계좌잔액 (A)	지출예정금액			차액 (C=A-B)	대금결제 기준일
			계 (B)	카드결제	자동이체 (공과금)		
-	카드결제 및 자동이체	2,699,561	2,641,270	1,945,970	695,300	58,291	전월16일~말일 : 12일 당월 1일~15일 : 27일

※ 황간면 제출자료 재구성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제Ⅳ장.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요령 / 3.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집행품의 금액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12월 말일까지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하여야 함.
-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해당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제)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함.

〈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

-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황간면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총 4개의 신용카드(법인 일반용 2, 공공 조달 유류구매 2)의 이용내역과 카드결제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점검한 결과, 2017년 10월 12일 이용대금 명세서상 결제할 금액은 3,289,600 원이나 결제계좌에서 실제 인출된 금액은 3,290,536원으로 기존에 대금결재를 지연하여 936원의 연체이자 발생을 알 수 있으며, 2018년 2월 27일 이용대금 명세서상 결제할 금액은 2,099,410원이나 결제계좌에서 실제 인출된 금액은 2,099,512원으로 기존에 대금결재를 지연하여 102원의 연체이자 발생을 알 수 있으며, 2018년 4월 27일 신용카드 대금 및 자동이체 지출예정금액은 2,641,270원이나, 카드결제 계좌의 잔액은 2,699,561원으로 결제할 금액보다 58,291원이 결제계좌의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로 통장잔액과 결제할 금액이 계속 불일치 하고 있음에도 그 차이를 해소시키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계좌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황간면장은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공과금과 카드결제계좌의 잔액이 일치되도록 계좌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RFID 물품 전자태그 발행 및 부착 소홀

【현 황】

○ 전자태그 미부착 현황

연번	자산번호	분류번호	물품명	규격명	취득일자	취득수량	취득단가 (원/개)	취득 적요	보관 장소	태그 관리 여부	태그 부착 여부
1	20171200645 2 ~ 20171200645 6	56112102	작업용 의자	DS0501 580×590×12 00mm	20171227	5	277,780	면사무소 직원의자 구입	1층	지정	부
2	201712006457 ~ 201712006474	56112102	작업용 의자	DS8390 585×570×11 30mm	20171227	18	163,000	면사무소 직원의자 구입	1층	지정	부
3	201712006475	56112102	작업용 의자	DS8513 630×690×11 20mm	20171227	1	364,000	면사무소 직원의자 구입	1층	지정	부
4	201605000327 ~ 201605000426	56101542	접이식 의자	NF-C41253 460×530×74 0mm	20160519	100	30,000	노후화에 따른 대체 취득	2층 대회의실	지정	부

【위법부당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7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황간면은 2017년 12월 27일 취득한 작업용 의자 24개 물품과 2016년 5월 19일 취득한 접이식 의자 100개 물품에 대해 RFID 물품 전자태그발행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RFID 물품관리용 태그발행기를 통한 태그발행 및 부착을 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황간면장은 작업용 의자 24개와 접이식 의자 100개 물품에 대해 태그발행 및 부착을 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26,23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현 황】

1. 시간외 근무수당 과오지급 내역

(단위 : 시간, 원)

직급	성명	단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				시간외근무수당 적정 지급내역				차액	비고
			기본	초과	합계	금액	기본	적정 초과시간	합계	금액		
계	명		20		32	288,020	20		29	261,790	26,230	
○○★급	■□■	10,003	10	5 (304분)	15	150,040	10	4 (286분)	14	140,040	10,000	3월분
◆◆★급	◎○○	8,117	10	7 (458분)	17	137,980	10	5 (301분)	15	121,750	16,230	5월분

2. 산불 근무시간 미준수 내역

근무일자	직급	성명	휴일 구분	근무 구분	출근시간 (분)	퇴근시간 (분)	미준수시간	적정초과 시간(분)	근무내역
2017-03-26	○○★급	■□■	휴일	현업	10:46	15:04	3시간42분	240분	봄철산불비상근무
2017-05-20	◆◆★급	◎○○	휴일	현업	11:23	18:00	1시간23분	240분	산불비상근무

【위법부당사항】

-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개인별, 초과근무일별 초과근무 사전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근무한 자는 근무종료 후 지문인식 등을 통해 초과근무 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산림과에서 2017. 2. 17일 시행한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 적용 알림』 공문에 의하면, 읍면에서 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시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10:00~18:00 까지 근무를 하면 8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용하며,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한시간을 미적용(휴일 및 토요일 4시간 적용)함.

- 황간면에서는 위 [현황 2] 산불 근무 시간 미준수 내역과 같이 ■■■ □ □ 외 1명이 휴일 현업 산불 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현황 1]과 같이 과다하게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 26,230원을 행정과에 제출하여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황간면장은 과오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26,230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회계관계 공무원의 이동보고 소홀

【이 동 현 황】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발령일자	변경전	변경후	보고여부
재무관	2017.01.04	○○○	■ ■ ■	미보고
지출원	2017.07.20	○○○	□ □ □	미보고

【위법부당사항】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 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제6조에 따라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함.
- 황간면에서는 인사이동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이 변경되었으나, 위 현황과 같이 2017.01.04.일 재무관 변경, 2017.07.20.일 지출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동보고를 하지 않는 등 회계관계 공무원 이동보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황간면장은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 미 준수

【당직근무 시 보안(세콤)장치 개·폐 현 황】 : 따로붙임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는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 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영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규칙」 제4조 당직의 구분에는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2017. 1. 14.(토) ▲▲○급 ◆◆◆ 등 7명은 공휴일 및 토요일 당직근무를 하면서 지각하여 출근(19회)하거나 조기 퇴근(13회)하는 등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황간면장은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당직근무 시 보안(세콤)장치 개·폐 현황】

구분	근무일자	개폐시간		당직근무자		비고
		해제	세트	직급	성명	
1	2017.01.14.(토)	09:00:16	18:06:11	-	-	
2	2017.01.21.(토)	09:04:45	18:03:09	-	-	
3	2017.02.18.(토)	09:04:32	18:37:02	-	-	
4	2017.02.26.(일)	09:07:47	19:55:38	-	-	
5	2017.04.01.(토)	09:04:16	19:00:36	-	-	
6	2017.04.15.(토)	09:01:08	22:02:17	-	-	
7	2017.05.13.(토)	09:00:29	18:03:41	-	-	
8	2017.05.20.(토)	09:01:25	18:03:59	-	-	
9	2017.05.27.(토)	09:13:00	18:06:10	-	-	
10	2017.06.10.(토)	09:06:16	25:02:08	-	-	익일 경비
11	2017.09.23.(토)	09:07:23	25:00:58	-	-	익일 경비
12	2017.10.04.(수)	08:54:03	17:59:05	-	-	
13	2017.10.05.(목)	08:56:09	17:59:31	-	-	
14	2017.10.06.(금)	08:49:41	17:56:18	-	-	
15	2017.10.07.(토)	08:34:48	17:56:44	-	-	
16	2017.10.08.(일)	08:55:43	17:56:44	-	-	
17	2017.10.09.(월)	08:53:43	17:57:53	-	-	
18	2017.10.14.(토)	09:24:45	18:06:12	-	-	
19	2017.10.21.(토)	08:54:14	17:59:21	-	-	
20	2017.10.22.(일)	09:01:15	17:58:04	-	-	
21	2017.10.29.(일)	09:01:33	18:50:08	-	-	
22	2017.11.05.(일)	09:04:58	18:06:00	-	-	
23	2017.11.19.(일)	07:25:58	17:59:55	-	-	
24	2017.12.23.(토)	08:54:15	17:58:25	-	-	
25	2017.12.24.(일)	08:58:37	17:57:46	-	-	
26	2017.12.30.(토)	08:52:34	17:58:05	-	-	
27	2018.01.01.(월)	09:00:08	18:02:42	-	-	
28	2018.01.07.(일)	08:53:43	17:49:50	-	-	
29	2018.01.14.(일)	09:09:55	18:16:37	-	-	
30	2018.01.28.(일)	09:01:29	18:05:34	-	-	
31	2018.04.21.(토)	09:05:36	20:04:08	-	-	

※ 2017.01.01.~ 현재. 보안(세콤)장치 표본 자료 재구성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용차량 이용 직원의 출장명령 절차 미 이행

【공용차량 이용 직원의 출장명령 절차 미 이행 현황】

구분	차량 사용일	차 량 명 (차량번호)	운 행 자	용무(운행)	비고
1	2017.11.18.(토)	소형화물 (-)	-	산불감시	
2	2018.3.3.(토)	소형화물 (-)	-	산불감시	

※ 토요일, 공휴일 출장내역 및 차량운행일지 참고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에 따르면 각급 기관의 장은 영동군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근무 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6조(출장의 절차) 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직원이 근무지 내 출장을 할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인 면장의 출장명령 허가를 받고 출장을 했어야 하며,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

등의 명확성을 위해 출장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 2017. 8. 24. ~ 현재까지 ▲▲★급 ○○○ 등 2명은 각각 산불감시 업무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면서 사전 출장명령 허가 없이 출장을 실시하는 등 근무상황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황간면장은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추진 소홀

【시설공사 하자검사대상】

- 2017년 상반기 ○○리 농로포장공사 외 52건
- 2017년 하반기 ●●●● □□보수 및 ◆◆◆ 조성사업 외 65건
- 2018년 상반기 황간면 ●●● 조성사업 외 62건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설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 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금 3천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황간면에서는 2017년 상반기 53건, 2017년 하반기 66건, 2018년 상반기 63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같은 기간 하자담보 책임 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로 시행해야 하는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시설공사 준공에 따른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황간면장은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940,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부적정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부적정 현황】

구분	수 급 자		전출일	지 급 현 황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지급기간(횟수)	지 급 액	
	계				1,940,000	
1	▲▲▲	-	2016.04.29	2016.05. ~ 2016.12.(8개월)	640,000	8만원/월
				2017.01. ~ 2017.12.(12개월)	1,200,000	
				2018.01(1개월)	100,000	10만원/월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수당 등의 지급을 중지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3호에 의거 보조금을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수급자인 ▲▲▲에 대하여 군 외의 지역으로 2016년 4월 29일 전출하였음에도 참전유공자 수당을 2018년 1월까지 1,940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황간면장은 ▲▲▲에게 잘못 지급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940,000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장애인 표지판 발급 부적정

【장애인표지판 발급 부적정 현황】

구분	대상자	장애유형	주장애등급	표지발급유형	보행상장애여부	발급일자	비고
1	-	간	5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부	2017.07.13	
2	-	뇌병변	5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부	2017.01.12	
3	-	청각(청력)	5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부	2017.04.05	
4	-	시각	6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부	2017.04.03	
5	-	지적	2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부	2017.03.22	
6	-	언어	4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부	2017.03.08	
7	-	시각	6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부	2017.02.28	
8	-	지적	2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부	2017.02.27	
9	-	지체(상지절단)	6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부	2017.02.07	
10	-	청각(청력)	5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부	2017.02.06	
11	-	지적	3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부	2017.02.06	
12	-	시각	6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부	2017.02.03	
13	-	지체(상지기능)	6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부	2017.01.24	
14	-	지체(상지기능)	6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부	2017.01.24	

【위법부당사항】

- 「2017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지침」 (Ⅱ)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에 의하면 자동차 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정의와 보행 상 장애 유무(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

표를 적용) 등에 따라 11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황간면에서는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시 보행 상 장애가 없는 □□□□ 외 13명에 대해서 「주차가능」 표지판을 발급하는 등 관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황간면장은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주의

【제 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지급 업무 및 관리 소홀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쓰레기봉투 무료지급대상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급하고, 가구당 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2015년 6월(122명), 2016년 1월(115명), 11월(115명), 12월(115명) 쓰레기봉투 무상 배부 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쓰레기봉투(20리터) 1,401매를 지급하지 않는 등 기초생활보장가구에 대한 무료종량제 봉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쓰레기봉투를 공급 또는 무상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쓰레기봉투의 잔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도록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불대장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대장상의 잔량과 실제 보관하고 있는 잔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리대장의 정비 등을 통한 원인파악 등의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등 쓰레기봉투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황간면장은 실제 보관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잔량을 파악하여 관리대장을 정비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기재소홀

【현 황】

<인감증명발급대장 기재 누락현황>

위임자	사용용도	발급통수	대리인	관계	위임일자	인감증명 발급대장
-	일반용 (농협제출)	2	-	자	2016.1.22.	누락
-	일반용	1	-	배우자	2016.2.12.	누락
-	일반용	2	-	모	2016.2.11.	누락
-	일반용 (관공서제출)	1	-	부	2016.2.15.	누락
-	매도용 (자동차)	1	-	배우자	2016.2.22.	누락
-	일반용 (회사제출)	1	-	배우자	2016.3.4.	누락
-	일반용 (자동차등록)	1	-	부	2016.3.10.	누락
-	매도용 (부동산)	1	-	배우자	2016.3.14.	누락
-	일반용 (관공서제출)	2	-	직원	2016.3.21.	누락
-	일반용	1	-	배우자	2016.4.12.	누락

【위법부당사항】

- 인감증명사무편람에 의하면 인감증명을 대리로 발급받거나 서명이 불가능한 사람이나 신분확인 상의 문제로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감증명발급대장(수기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수령인

란에 본인인 경우에는 무인 또는 서명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해야 함에도,

- 황간면에서는 상기와 같이 ○○○ 외 9건은 대리인 신청으로 인감증명을 발급했음에도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를 누락함.

【처분내용】

- 황간면장은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훈계

【제 목】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첨부서류 확인 소홀

【위법부당사항】

-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서에 따르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신청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읍·면장은 첨부서류가 면제되거나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는 접수증을 배부, 접수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하고, 첨부서류(농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경작확인서 등)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추후 일정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단,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 대상 선정취소)고 규정하고 있음
- 황간면에서는 2017년 쌀소득 직불금 지급 시 신규농지 경작자에 대한 첨부서류 제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신청자 ▲▲▲ 외 22명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황간면장은 첨부서류 미비자 ▲▲▲ 외 22명에 대해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하시고 미제출시에는 직불금 환수조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15,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소규모사업 공사감독 소홀

【현 황】

공 사 명	도급액 (천원)	도 급 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도급액(천원)			비고
						당초	변경	정산	
계	2건							115	
○○○ ○○○ ○○○ 정비공사	11,794	-	17.04.05	17.04.13	17.05.15	11,794	11,707	87	
◆◆리 ◆◆ 및 ◆◆◆정비공사	12,700	-	17.04.28	17.05.01	17.06.23	12,700	12,672	28	

【위법부당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하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관계서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에 의하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2017. 04. 28. (주)▲▲▲▲▲ ★★☆☆과 계약하여 완료된 「◆◆◆리 ◆◆◆ 및 ◆◆◆정비공사」 건에 반영된 PE 빗물받이(300X400) 1EA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처리하여 28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였고,
- 2017. 04. 05. □□□□(주) ◎◎◎과 계약하여 완료된 「○○○ ○○○ ○○○ 정비공사」 건에 반영된 날개형 스틸그레이팅 96EA 중 1EA가 누락되었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 처리하여 87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황간면장은 과다 지급한 115,000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04,540원 / 지급 949,42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소규모사업 공사원가계산 제경비 정산 부적정

【현 황】

○ 제경비(이윤) 정산 부적정

공 사 명	사업량	도급액 (천원)	도 급 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조정금액(원)			비고
							당초	변경	정산	
계(5건)									104,540	
★★리 배수로정비사업	배수로 L=152m	9,200	-	15.11.03	15.11.09	15.11.26	169,180	179,450	10,270	
◎◎리 세천정비공사	블록 L=95m	10,110	-	16.03.14	16.03.16	16.04.18	355,250	395,180	39,930	
□□리 농로 및 진입로 정비공사	블록 L=33m 블록 L=33m	12,429	-	16.03.14	16.03.16	16.05.13	401,040	414,550	13,510	
▲▲리 농로포장공사	콘포장 400m 디자인웬스 L=14m	5,964	-	16.05.02	16.05.04	16.06.07	146,930	161,850	14,920	
▣▣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수로관 116m 콘포장 98m	8,541	-	16.07.26	16.07.28	16.08.22	234,120	260,030	25,910	

○ 제경비(일반관리비, 이윤) 정산 부적정

공 사 명	사업량	도급액 (천원)	도 급 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조정금액(원)			비고
							당초	변경	정산	
◆◆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플룸관 77m 이중벽관 77m 콘크리트포장 A=76㎡	9,670	-	17.04.06	17.04.13	17.12.05	1,291,220	341,800	-949,420	

【위법부당사항】

○ 준공 시 제출된 보험료 감액동의서는 착공내역서에 반영된 원가계산 제
비율 항목에 대한 사용 여부 확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계산하여야

함에도,

- 2015.11.03. ○○○○(주) ▲▲▲와 계약하여 완료된 「★★리 배수로정비사업」 외 4건은 착공내역서상 이윤에 적용된 비율보다 낮게 반영·계산하였음에도 정정 없이 준공처리하여 104,540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였고,
- 2017.04.06. ◎◎◎◎(주) ▽▽▽과 계약하여 완료된 「■▣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착공내역서상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적용된 비율보다 높게 반영·계산하였음에도 정정 없이 준공처리하여 949,420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적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황간면장은 「★★리 배수로정비사업」 외 4건에 과다 지급한 공사비 104,540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적게 지급한 공사비 949,420원을 지급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옥외광고물 관리 소홀

【현 황】

-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미 안내 및 미조치 현황 : 별첨

【위법부당사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제10조(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의 연장) 및 영동군 옥외광고물관리 조례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항에 따르면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황간면 ○○○○로 ★★★★★「○○○ ○○○○○○○○○○○」의 207건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 표시기간 연장안내를 하지 않는 등 옥외광고물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처분내용】

- 황간면장은 황간면 ○○○○로 ★★★★★「○○○ ○○○○○○○○○○○」의 207건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안내를 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9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 보상금 지급 부적정

【현 황】

○ 2016년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 보상금 지급 현황

마을명	신청자명	벼 재배면적(㎡)	지급액(원)	비고
계			58,750	
황간면 ○○리	-	810	5,670	
황간면 ○○리	-	789	5,520	
황간면 ○○리	-	691	4,840	
황간면 ○○리	-	952	6,660	
황간면 ○○리	-	926	6,480	
황간면 ○○리	-	476	3,330	
황간면 ○○리	-	732	5,120	
황간면 ○○리	-	971	6,800	
황간면 ○○리	-	830	5,810	
황간면 ○○리	-	420	2,940	
황간면 ○○리	-	462	3,230	
황간면 ○○리	-	336	2,350	

○ 2017년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 보상금 지급 현황

마을명	신청자명	벼 재배면적(㎡)	지급액(원)	비고
계			66,630	
황간면 ○○리	-	750	5,950	
황간면 ○○리	-	476	3,770	
황간면 ○○리	-	764	6,060	
황간면 ○○리	-	926	7,340	
황간면 ○○리	-	462	3,660	
황간면 ○○리	-	971	7,700	
황간면 ○○리	-	952	7,550	
황간면 ○○리	-	336	2,660	
황간면 ○○리	-	420	3,330	
황간면 ○○리	-	786	6,230	
황간면 ○○리	-	830	6,580	
황간면 ○○리	-	732	5,800	

【위법부당사항】

-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은 쌀 소비량 감소 및 가격하락에 대응한 농업인 소득안정을 기하고 순도높은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지원으로 지역명품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우수한 고품질 쌀 생산 및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매년 벼 재배농업인에게 도비 30%, 군비 7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0.1ha 이상의 벼를 재배하고 있는 충북도 내 거주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공부확인 및 현지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2016년에는 ha당 99,900원, 2017년 ha당 79,350원의 단가(㎡당 7.935원)를 재배면적에 따라 산정하여 십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황간면에서는 2016년 벼 우량종자 지원사업 보상금 총 293농가에 13,674,480원, 2017년 벼 우량종자 지원사업 보상금 총 260농가에 9,587,870원을 지급하면서 【현황】 에서와 같이 벼 재배면적이 0.1ha미만인 경작자에게 총 125,380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황간면장은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0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산불감시원 운영관리 소홀

【위법부당사항】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르면 산불감시원은 입산통제구역 및 주요 등산로, 과거 산불발생지 등 산불취약지역 등에 우선 배치·운영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감시원별로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라 감시원 중에 조장을 임명하여 조원을 관리·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조장은 자신의 담당구역에 대한 산불감시활동과 병행하여 조원의 근무상황 확인·감독,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의 전달, 각종 산불방지사업의 내용과 목표량 부여 등의 임무를 조장근무일지에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황간면에서는 2017년 가을철 산불 감시원 및 2018년 봄철 산불감시원을 운영하면서 책임담당구역에 따라 산불감시원을 편성하고 각 조별 조장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산불감시원 조장이 조장근무일지를 기록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를 하지 않는 등 산불감시원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처분내용】

- 황간면장은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산불감시원 임금지급 부적정

【부당지급 현황】

(단위:원)

근로자	근로일	유급휴일수당	근로수당	휴일근로 가산금 (임금의 50%)	비고
계	(근로자의 날)			155,640	
-	2017. 5. 1	51,880	51,880	25,940원(미지급)	
-	2017. 5. 1	51,880	51,880	25,940원(미지급)	
-	2017. 5. 1	51,880	51,880	25,940원(미지급)	
-	2017. 5. 1	51,880	51,880	25,940원(미지급)	
-	2017. 5. 1	51,880	51,880	25,940원(미지급)	
-	2017. 5. 1	51,880	51,880	25,940원(미지급)	

【위법부당사항】

- 2017년 산불감시원 운영요령 IV.임금지급 및 근로계약 및 해당년도 산불감시원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산불감시원은 업무특성상 1주일 5일 근무(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를 실시하되 본인 지정된 휴일 근무시에는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휴일로 유급처리한다고 되어있음.

- 황간면에서는 2017년 5월 1일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 근무한 산불감 시원 ★★★ 외 5명에게 유급휴일수당, 근로수당 이외에 휴일근무에 따른 가산금 50%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현황】에서와 같이 휴일근로 가산금 총 155,64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황간면장은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지연·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업무 소홀

【현 황】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현황

연번	납부자	생년월일	차량번호	최초과태료 (대인1/대물)	전 보험만료일	현 보험가입일	비고
1	-	-	-	6,000/3,000	2017.01.08	2017.01.19	
2	-	-	-	미가입			
3	-	-	-	36,000/18,000	2017.02.01	2017.03.09	2017.3.9. 폐지신고
4	-	-	-	미가입			2017.2.7. 폐지신고
5	-	-	-	6,000/3,000	2017.2.21	2017.2.24	
6	-	-	-	28,800/14,400	2017.5.2	2017.6.1	2017.6.12. 폐지신고
7	-	-	-	63,600/31,800	2017.5.12	2017.7.10	
8	-	-	-	175,200/87,600	2017.6.9	2017.11.8	
9	-	-	-	64,800/32,400	2017.6.19	2017.8.18	
10	-	-	-	미가입			
11	-	-	-	55,200/27,600	2017.6.30	2017.8.21	
12	-	-	-	6,000/3,000	2017.6.27	2017.7.3	
13	-	-	-	40,800/20,400	2017.7.9	2017.8.18	
14	-	-	-	미가입	2017.7.20		
15	-	-	-	175,200/87600	2017.7.21	2017.12.20	
16	-	-	-	21,600/10800	2017.7.21	2017.8.14	

【위법부당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군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지체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등)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영동군 사무위임 규칙 제2조(권한재위임사항) 별표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와 관련되어 권한이 재위임된 업무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업무는 읍·면장에 재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황간면에서는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 외 3명에 대해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지 않았고,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지연 가입자 ○○○ 외 15명에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하였으며 또한,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가 수납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독촉 및 체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과태료 부과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황간면장은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 외 3명에 대해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 및 체납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